01 고용·산재보험 문의는 고객지원센터 (전국 국번없이 1588-0075)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02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인터넷 신고는 빠르고 편리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03 보험료 산정 계산기로 쉽고 간편하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안내]

▶ 토탈서비스 접속(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는 빠르고 편리한 토탈서비스로 !!
- 법정 신고기한보다 빨리 신고하면 할수록 경품은 UP!!
- 행사기간 : 보험료 신고 - 2016년 3월 1일 ~ 2016년 3월 25일
  보수총액 신고 - 2016년 2월 1일 ~ 2016년 3월 10일
- 당첨경품 : 노트북, 태블릿 PC, 온누리상품권 등 200여명
- 당첨발표 : 2016년 4월 12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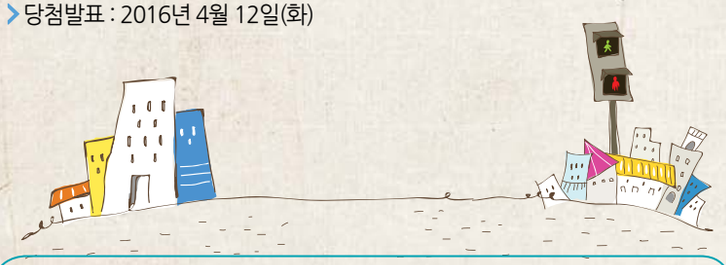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Help-Line(헬프라인) 또는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 납부 안내문

신고 · 납부 안내 동영상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건설업·벌목업"
2016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신고 · 납부기한
2016. 3. 31.(목)

안내 말씀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2016. 3. 31.까지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팩스로 접수할 경우 3월26일 ~ 3월31일 사이에는 수신량이 폭증하여 송 · 수신 서비스 등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25일(금)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16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 고용 · 산재보험료 신고 · 납부 안내 3
- 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 8
-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 방법 안내 18
-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안내 21
- 제출 방법 안내 21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보험료 전자신고 방법 22
-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무료서비스』 안내 25
- 주요정보 안내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용인증서 사용 안내 26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기한 변경 안내 26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확대 안내 26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27
  - 건설업 등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비율 안내 27
  - 복지 · 대부사업 안내 28
  - 퇴직연금사업 안내 29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 지사 안내 30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건설업 등의 보험료 신고 · 납부대상 사업주는 **2015년 확정보험료**와 **2016년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 · 납부기한인 **2016년 3월 31일(목)까지 자진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제1기 보험료는 자동계좌 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 건설업 · 벌목업 사업장

▷ 2012. 1. 21.이전 가입한 고용보험 자영업자

본 책자의 안내에 따라 보내드린 보험료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신고서 하단 및 본 책자 30~31페이지 관할 지역본부 · 지사 참조)에 2016년 3월 31일(목)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방 문 접 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 지사
- ▶ **팩 스 접 수**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 수신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6. 2. 15.~3. 31. 기간 중에는 전자팩스 수신 여부 자동회신)
- ▶ **인터넷접수**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전자납부 가능) 단,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필요
- ▶ **우 편 접 수** 2016년 3월 31일(목)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출된 보험료는 같이 보내 드린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2016년 3월 31일(목)**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목) 경과 후 신고 · 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 · 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추가 납부할 금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위 기일 내 반드시 신고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 관할 지역본부 ·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보험료 성실신고 안내

◈ 건설업 등 보험료 성실신고 자가검증시스템 도입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에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잘못 산정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보수총액을 계산 해 볼 수 있는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및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 자가검증시스템 사용 안내

토탈서비스 접속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① (토탈서비스 접속) 포털사이트를 통해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접속 후 로그인(미가입시 회원가입)

② (민원접수/신고) **좌측 상단 민원접수/신고 버튼** 클릭

③ (보험료신고) **좌측 보험료신고 버튼** 클릭

④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버튼** 클릭 → **사업장 정보 입력 · 조회** →

결산서 주요 계정 입력 펼치기 버튼 클릭 후 입력

◈ 2015년도 확정보험료 성실신고 안내

- 공단에서는 **매년 국세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확정보험료 불성실 신고 추정 사업장을 선정하여 과거 3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해 조사(확정정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불성실 신고시 가산금, 연체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연도별 확정정산 현황

연도	확정정산 사업장수(개소)	보험료 추징현황	
		사업장수(개소)	추징액(억 원)
2013	2,431	1,865	923
2014	2,509	2,120	750
2015	2,527	2,114	901

② 2015년도 보험료 적정부과 조사 사업장 현황

구 분	사업장수(개소)	추징액(억 원)
합 계	**8,244**	**134**
3년 연속 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 과소신고 사업장	826	78
'14년 확정보험료 "0" 원 신고 사업장	4,693	26
'15년 개산보험료 "0" 원 신고 사업장	2,725	30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직업소개소 알선 현장인력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고용 ·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
본사 소속 현장근무자의 산재보험료	현장소장 · 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본사 소속 현장근무자의 고용보험료	현장소장 · 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 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하자보수공사 직영노무비	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 사용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누락
공동도급공사	① 공동도급공사는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보수) 및 외주공사비의 31%('15년 하도급 노무비율)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표사의 매입계산서 비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보수총액에서 누락 ②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각 사는 본부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각 사의 출자비율만큼 해당 공사에 대한 고용 ·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각 사의 본사 고용보험으로 신고 · 납부하기로 협약한 후 출자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
하도급 공사 현장의 보수총액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지 않음에도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실 보수'를 적용하고 파악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현장에 대해서만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를 잘못 산정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총액 산정방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 보수 기준으로 보수총액 산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 중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산정
재료비 계정 등의 외주공사비 · 노무비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계정 등의 외주공사비와 노무비를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31%('15년 하도급 노무비율)만 신고
생산제품 설치특례 비해당 공사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보수총액 산정시 누락

2016년도 고용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2016)년도 고용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단담당자 : ※ 사업장작성자 : (전화번호 :)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신고 사업장	사업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 (2015)년 확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③확정보험료액 (①X②)	개산보험료액 ④신고액	개산보험료액 ⑤납부액	⑥추가납부할액 (③-④)	⑦초과액 (⑤-③) 충당액	⑦초과액 (⑤-③) 반환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5-01-01~2015-12-31		/1,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5-01-01~2015-12-31		/1,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5-01-01~2015-12-31		/1,000						
		계	–	–	–						

▼ 아래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2016))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일반)요율	⑩개산보험료액(⑧X⑨)	⑪분할납부 여부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6-01-01~2016-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6-01-01~2016-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6-01-01~2016-12-31		/1,000		
		계		–	–		

※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 (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01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인원	산재보험 보수총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인원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명	원
합계	명	원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명	원

(뒷 면)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5 제4기-11.15)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해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됨을 유의하세요.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구분		개산보험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	원	원	원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	원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계	원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보험료신고서 작성요령

㉮ 신고 사업장 ---------- 9
㉯ (201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 10
㉰ (2015)년 확정보험료 ---------- 11
㉱ (2016)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 12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 14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16

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

보험료신고서를 본 책자에서 설명하는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건설업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은 보험료 산정시 유의할 점을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설업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

1. 2015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사무(내근)직원 보수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31%)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31%)

〈유의사항〉

- 건설일괄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기공사 ② 원도급공사
  ③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내역을 모를 경우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역본부 · 지사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 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를 참조(5페이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2016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 방법

- '16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15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0이상~130/1000이하인 경우는 '15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Ⅰ. 공통사항

㉮ 신고 사업장

(2016)년도 고용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공단담당자 : ※ 사업장작성자 : (전화번호 :)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신고 사업장	사업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 사업구분
  사업구분은 일반사업장(건설업본사), 건설업, 벌목업, 해외사업장(건설업), 고용보험 자영업자('12. 1. 21.이전 승인 받은 사업장에 한함) 중 해당 사업입니다.
- 사업장의 일반적인 사항(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 확인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기재
  - 휴대전화, 이메일 등은 신고기한, 납부기한 등 주요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Ⅱ.『건설업 등』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⑯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법상의 비과세⑱–11, ⑱–14, ⑱–15, ⑱–20)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습니다.)

※ 휴업 · 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
(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 201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 (201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	·	·	·	·	·	·
·	·	·	·	·	·	·
11월	명	원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명	원
합계	명	원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명	원

➔ **월별 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월별 보수총액**은 매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한 보수 포함)을 기재 합니다.

● 건설업 현장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2015.1월~12월[직영근로자 보수 + 하도급근로자 보수 → 외주공사비×31%(하도급 노무비율)]

※ 단, 외주공사비를 월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월할 적용하여 산정
- 월별 인원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
  [월보수총액 ÷ '15년 건설업 월평균보수 (3,157,765원)]

● 건설업 본사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구 분		보수총액 포함 항목			
		대표자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건설 현장 일용직근로자	65세이후 고용된 근로자
산 재 보 험		제외	제외	제외	포함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	포함	제외	제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제외	포함	제외	포함

※ 전체 보수총액에서 대표자보수 등 제외 후 산정한 보수총액을 ㉯항목 산재, 고용보험 『합계』 금액에 기재하며, 이 금액이 11페이지 ㉰ 항목 2015년 확정보험료 ①보수총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 시 산재보험 보수총액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보수 제외, 본사소속 현장 근무직원 보수는 건설현장으로 신고)
고용보험 보수총액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보수 제외) +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현장소장, 기사 등) 보수 전체

● 건설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합니다.**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 (외주공사비×하도급 노무비율 31%)] × 보험료율

※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는 포함하며,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 준 공사(외주공사비)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는 제외

※ 산재보험은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가 건설현장에 파견된 경우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 사업주가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수급인의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총액 계산시 해당 보수를 제외합니다. 단, 해외 건설공사 파견 근로자는 포함.

㉰ 2015년 확정보험료 (예시)

㉰ (2015)년 확정보험료	구 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일반)요율	③확정보험료액 (①×②)	개산보험료액	
							④신고액	⑤납부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5-01-01~ 2015-12-31	122,212,275	10.84/1,000	1,324,780	1,084,000	1,000,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5-01-01~ 2015-12-31	122,212,275	13/1,000	1,588,750	1,100,000	900,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5-01-01~ 2015-12-31	122,212,275	2.5/1,000	305,530	250,000	200,000
		계	–	–	–	1,894,280	1,350,000	1,100,000

① 보수총액

》 10페이지 ㉯ **항목 201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② 보험료율

》 2015년도 산재보험료율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경우 『(개별)요율』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2015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 등
2015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해당사업장 한함)을 산재보험료율과 합산 표시하였으며,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③ 확정보험료액 = ①보수총액 × ②보험료율

※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고 ③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

예 시 위 ㉰항목의 ②번 보험료율에서 '15.1.1.~ '15.12.31.까지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1,000이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2.5/1,000이므로,

- 실업급여 확정보험료액 = 122,212,275×13÷1,000 = 1,588,759원(원단위 이하 절사) ➔ 1,588,750원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정보험료액 = 122,212,275×2.5÷1,000 = 305,530.68원 (원단위 이하 절사) ➔ 305,530원

※ 고용보험료(계) = 1,588,750 + 305,530 = 1,894,280원

※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계산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합산한 후 원단위 이하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후 합산

㉱ 2016년 개산보험료 (예시)

	구 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 여부
㉱ (2016)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6-01-01~ 2016-12-31	122,212,275	10.64/1,000	1,300,33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6-01-01~ 2016-12-31	122,212,275	13/1,000	1,588,75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6-01-01~ 2016-12-31	122,212,275	2.5/1,000	305,530	
		계	–	–	–	1,894,280	

※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 (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⑧ 보수총액

》 2016년도 1년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입니다.

》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2015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2015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예 시 ①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금액이 1,000만원이고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800만원 일 경우 ⑧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800만원÷1,000만원×100=80% →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30% 사이)

⑨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 임금채권부담금비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2016년도 산재보험 일반요율 : 건설업 38/1,000, 건설업본사 10/1,000

※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개별)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2016년도 개별실적요율 대상은 성립일이 2012.6.30.이전 이고, 건설업 본사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14. 7. 1~'15. 6. 30.),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은 2014년도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 2016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 : 0.6/1,000

○ 사업장 임금채권부담금비율 경감기준

–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퇴직보험(일시금신탁), 외국인근로자 출국 만기보험(일시금신탁) 등에 가입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감을 받으시려면 별도의 부담금경감신청서(퇴직보험 등 가입확인서, 계약서 사본 첨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0.04/1,000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도

– 건설업(건설업본사와 건설일괄유기사업장)과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 중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2016년도 고용보험료율

구 분			2016년도 근로자부담	2016년도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전 사업 동일		6.5/1,000	6.5/1,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150명 미만 기업		없음	2.5/1,000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없음	4.5/1,0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150명 이상~1,000명 미만 기업	없음	6.5/1,000
		1,000명 이상 기업		8.5/1,000
	국가 · 지방자치단체		없음	8.5/1,000

※ 기재된 보험료율이 사업장의 실제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보험료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당한 보험료율로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율도 사업주 신고사항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이 추후 확인되면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⑪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

	구 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 여부
㉱ (2016)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6-01-01~ 2016-12-31	122,212,275	10.64/1,000	1,300,33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6-01-01~ 2016-12-31	122,212,275	13/1,000	1,588,75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6-01-01~ 2016-12-31	122,212,275	2.5/1,000	305,530	
		계	–	–	–	1,894,280	

※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 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 (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 ⑪분할납부 여부에 일시납부를 선택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하시면 3% 공제 혜택(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 경감)이 있습니다.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V]일시납부에 표시).
- 분할납부를 선택하시면 해당 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고(⑪분할납부 여부 항목 [V]분할납부에 표시), 보험료신고서 뒷면의 ㉲ 항목으로 이동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⑪ 분할납부 여부 항목에서 분할납부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개산보험료 납부기한 : 제1기 – 3. 31., 제2기 – 5. 15., 제3기 – 8. 15., 제4기 – 11. 15.)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⑥)은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6		사업장명	(주) 0 0 건 설	
구분		개산보험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300,330원	325,090원	325,080원	325,080원	325,08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1,588,750원	397,210원	397,180원	397,180원	397,18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305,530원	76,390원	76,380원	76,380원	76,380원
	계	1,894,280원	473,600원	473,560원	473,560원	473,560원

2016년 3월 26 일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 0 0 건 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⑩ 2016년도 개산보험료액(**고용보험의 경우 각 사업별**)을 4등분하되 2기 이후 금액은 원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하여 균등하게 기재하고, 전체금액에서 2기~4기 금액 합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제1기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예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1,588,750원÷4 = 397,187.5원이므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397,180원을 위의 서식과 같이 제2기부터 제4기 금액에 기재하고 개산보험료총액 1,588,750원에서 제2기~제4기의 합산금액인 1,191,540원을 뺀 397,210원을 제1기에 기재

※ 『개산보험료』는 앞면 ⑩번의 개산보험료 전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과납액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4회 분할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산보험료 자동계좌이체 납부 유의 사항**

– 개산보험료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4월 11일까지 신청하시면 2기(5월 15일 납기)부터 자동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제1기 보험료는 자진납부 제도의 특성상 자동계좌이체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존 자동계좌이체 신청사업장도** 2016년도 일시납부 보험료 또는 제1기(납부기한 3월 31일)보험료는 **자동계좌이체 처리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건설공사 내역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연도 이후 준공되는 공사의 경우, 보험료신고서 뒷면 ㉳항목으로 이동하여 건설공사의 기간 및 금액 명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확정보험료액과 신고 ·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비교를 통한 추가납부할 액, 충당액 및 반환액의 작성 방법(산재보험 · 고용보험 각각 확인 및 작성)

● ③확정보험료액과 ④신고한 개산보험료액(2015년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액)을 비교하여

㉮ 신고 사업장	사업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 (2015)년 확정 보험료	구분		산전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③확정보험료액 (①X②)	개산보험료액 ④신고액	개산보험료액 ⑤납부액	⑥추가납부할액 (③–④)	⑦초과액(⑤–③) 충당액	⑦초과액(⑤–③) 반환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5–01–01~ 2015–12–31		/1,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5–01–01~ 2015–12–31		/1,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5–01–01~ 2015–12–31		/1,000						
		계	–	–	–						

▼ 아래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2016)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일반)요율	⑩개산보험료액 (⑧X⑨)	⑪분할납부 여 부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6–01–01~ 2016–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6–01–01~ 2016–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6–01–01~ 2016–12–31		/1,000		
		계		–	–		

㉯ (2015)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인원	산재보험 보수총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인원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명	원

● ③ '15년 확정보험료액이 ④ '15년 개산보험료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

▷ **(③–④)금액을 ⑥추가납부할액에 기재하고, ⑩개산보험료액 [일시납부는 3%공제**(전자신고 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후의 금액, 분할납부는 제1기 분할납부금액]과 **합산 납부합니다.** (18페이지 납부서 작성요령으로 이동하여 작성합니다.)

※ ⑤개산보험료 납부액이 ④개산보험료 신고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2015년도 체납보험료입니다. 체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 작성 사례 : 추가납부할액 1,000원(③–④)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일반)요율	③확정 보험료액	개산보험료액 ④신고액	개산보험료액 ⑤납부액	⑥추가납부할액 (③–④)	비고
1,000,000	10/1000	10,000	9,000	0	1,000	올바른 산정(개산보험료 미납분 9,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해야 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0	10,000	잘못된 산정(개산보험료 미납분 9,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해야 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8,000	1,000	올바른 산정(개산보험료 미납분 1,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해야 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8,000	2,000	잘못된 산정(개산보험료 미납분1,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해야 함)

● ③ '15년 확정보험료액이 ⑤ '15년 개산보험료 납부액보다 많은 경우

▷ (⑤–③)금액이 ⑩ '16년 개산보험료액에서 3%공제(전자신고 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액에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 시 ③ 2015년 확정보험료액 : 752,000원, ⑤ 2015년 개산보험료납부액 : 1,577,320원, ⑩ 2016년 개산보험료액 : 1,152,320원 일 경우, 2015년 확정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은 825,320원(1,577,320원–752,000원)이 되고,

2016년 납부할 개산보험료액은 3% 공제(34,560원 = 1,152,320×3%, 원 단위 이하 절사)후 1,117,760원이 됩니다.
2015년 확정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인 825,320원이 2016년 납부할 개산보험료 1,117,76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차액 금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⑦초과액(⑤–③)	
충당액	반환액
825,320	

▶ 충당액란 기재후에 보험료신고서 뒷면의 ㉮ 항목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⑤–③)금액이 ⑩ '16년 개산보험료액에서 3%공제(전자신고 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일시납부를 선택하시고, 3% 공제한 '16년 개산보험료액(전자신고 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을 충당액에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액에 기재합니다.

예 시 ③ 2015년 확정보험료액 : 752,000원, ⑤ 2015년 개산보험료 납부액 : 1,577,320원, ⑩ 2016년 개산보험료액 : 752,320원 일 경우, 2015년 확정보험료액과 2015년 개산보험료 납부액의 차액은 825,320원(1,577,320원–752,000원)이 되고,

2016년 납부할 개산보험료액은 3% 공제(22,560원 = 752,320원×3%, 원 단위 이하 절사)후 729,760원이 됩니다.
2015년 확정보험료액과 2015년 개산보험료 납부액의 차액인 825,320원이 2016년 납부할 개산보험료 729,760원을 초과하므로 ⑪ 분할납부 여부를 일시납부로 선택하시고, 충당액과 반환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⑦초과액(⑤–③)				
	충당액		반환액	
	729,760		95,560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충당이나 반환액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뒷면 ㉯ 항목 분할납부신청서상의 1기 금액(전자신고시 5천원 경감)을 기재하시고,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앞면 ⑩번 개산보험료액에서 3% 공제한 금액(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 경감)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 개산보험료 일시납액(3% 공제 후)에 전액 충당되고도 잔여액이 남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 대상액을 앞면 ⑦번 초과액 란의 반환액에 기재하고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 8 8 건 설 사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729,760원	729,760원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계	원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근 로)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			예금주 : (주)88건설(법인계좌)	

2016년 3월 26 일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 8 8 건 설 사 (서명 또는 인)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사업주는 사업주 개인계좌, 법인사업주는 법인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1기를 충당하고 잔여액이 남을 경우에는 기재란을 수평으로 2등분하여 2기 보험료액 및 남은 충당가능 금액을 기재 [이 경우 1기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납부 2기분 납부기한(5.15.)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 8 8 건 설 사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기) 188,080 원	(1기) 188,080 원	0 원
		(2기) 188,080 원	(2기) 15,940 원	172,140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계	원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근 로)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			예금주 : (주) 88건설사	

2016년 3월 26 일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 8 8 건 설 사 (서명 또는 인)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충당할 때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간에는 상호 충당할 수 없습니다.

Ⅳ.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12. 1. 21. 이전 승인받은 사업장)

- '고용보험 자영업자' 는 확정보험료 신고가 없으므로 ㉯, ㉰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 의 2016년도 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만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016년도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수총액 : 23,040,000원(월1,920,000원×12개월)
- **'고용보험 자영업자' 는 분할납부하실 수 없으며,**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57,600원을 납부방법을 참고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미납부 또는 보험료신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 여부
㉱ (2016)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V]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16–01–01~ 2016–12–31	23,040,000	2.5/1,000	57,600	
		계	–	–	–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 방법 안내

① 납부서 작성 요령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9,200원
②개산보험료	105,950원
③개산 3%공제액	원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6,750원

- 3% 공제는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 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 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초과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업급여	6,00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 계	14,000원
②개산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 계	904,150원
③개산 3%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 계	27,110원
④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86,040원

- 3% 공제는 개산보험료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 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 확정보험료 |

- 2015년 개산보험료 신고액(신고서④번)이 2015년 확정보험료액(신고서③번)보다 적은 경우
  - 신고서 앞면 ㉰항목 ⑥번 추가납부할 액을 기재

  ※ 기존 체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

| 확정충당액 |

- 2015년 개산보험료 납부액(신고서⑤번)이 2015년 확정보험료액(신고서③번)보다 많은 경우
  - 신고서 앞면 ㉰항목 ⑦번 충당액을 (−) 값으로 기재

② 개산보험료

- 일시납부인 경우 : 신고서 앞면 ㉱항목 ⑩번 개산보험료액을 기재
- 분할납부인 경우 : 신고서 뒷면 ㉲항목 제1기 보험료액을 기재

③ 개산 3% 공제액

- 일시납부인 경우에만 기재
  - 신고서 앞면 ㉱항목 ⑩번 개산보험료액×3% 하여 산정된 금액(원단위 이하 절사)

예시) 707,600원×0.03=21,228 → 21,220원,
196,550원×0.03=5,896 → 5,890원

※ 분할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이 란은 기재하지 마세요.

④ 전자신고 경감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보험료신고를 할 경우 개산보험료에서 5천원을 경감

▷ 전자신고시 보험료 5천원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1.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사업장(고용 · 산재보험 각각 적용)
2.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사업장
3. 고용보험 자영업자

납부할 금액

-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납부서상 ① + ② − ③ − ④
- 납부자용 영수증과 수납기관용 영수증서상의 납부할 금액란에 동일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9,200원
②개산보험료	105,950원
③개산 3%공제액	원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6,750원

- 3%공제는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 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 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초과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환경부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기한	2016년 3월 31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
전화번호 : 1588−0075 수납인
자료기준일 :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환경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기한	2016년 3월 31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
전화번호 : 1588−0075 수납인
자료기준일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업급여	6,00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 계	14,000원
②개산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 계	904,150원
③개산 3%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 계	27,110원
④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86,040원

- 3% 공제는 법정납기 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 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
회계(기금) : 고용보험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886,040원
납부기한	2016년 3월 31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
전화번호 : 1588−0075 수납인
자료기준일 :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886,040원
납부기한	2016년 3월 31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
전화번호 : 1588−0075 수납인
자료기준일 :

▶ 납부서 작성 예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 액이 있는 경우

2015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 10,000원, 2016년도 개산보험료100,000원 (일시납부), 전자신고

구분	금액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개산보험료	100,000원
③개산 3%공제액	3,000원
④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02,000원

2015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 10,000원, 2016년도 개산보험료100,000원 (4회 분할납부)

구분	금액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개산보험료	25,000원
③개산 3%공제액	원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35,000원

확정보험료 초과액(충당액)이 있는 경우

2015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충당액) 10,000원, 2016년도 개산보험료100,000원 (일시납부), 전자신고

구분	금액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개산보험료	100,000원
③개산 3%공제액	3,000원
④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2,000원

2015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충당액) 10,000원, 2016년도 개산보험료100,000원 (4회 분할납부)

구분	금액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개산보험료	25,000원
③개산 3%공제액	원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5,000원

※ 확정보험료는 3% 공제 또는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 개산보험료도 분할납부할 경우 3%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료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보험료 납부기한 중 가상 계좌별로 1회만 입금가능
- 산재보험 가상계좌와 고용보험 가상계좌는 별도이므로 각각 입금
- 입금 가능 금액 : 10원 이상이며, 원 단위 금액은 절사
- 입금가능시간
  – 납부기한 내 평일 : 07:00~23:00
  ※ 예약이체, 대량이체 불가

○ 인터넷지로(뱅킹)납부

- 납부은행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및 『거래은행 홈페이지(공과금 납부 선택)』로 접속하여 납부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이용가능시간 : 월~금 00:30~23:30(단, 일부 은행의 경우 365일 07:00~23:30이므로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참조)
- 거래은행별 인터넷 뱅킹 이용가능시간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 신용카드 납부 안내

- 납부한도 : 고용 · 산재보험별 1억2천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납부대행 수수료 : 보험료 납부금액의 1%를 납부자가 부담하며 보험료와 합산하여 신용카드 결제
- 납부방법 : ①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사회보험료 메뉴 → 산재보험료 (연납/자진납)또는 고용보험료(연납/자진납)선택 → 전자납부번호 또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 상세내역 → 클릭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선택) → 납부 처리
  ②공단 관할 지역본부 · 지사

○ 모바일 고지 · 납부서비스 안내

- 모바일 고지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분할 보험료 납부서 또는 자동이체 출금 안내문을 전송
- 모바일 납부 서비스 : 전송된 납부서의 QR코드로 편의점 납부 또는 뱅킹앱(우리은행)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대상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의 2,3,4기 분할납부 보험료(일시납부 및 제1기 분할납부 보험료는 제외)
- 신청방법 : 우리공단 지역본부 · 지사로 모바일 고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모바일 고지 신청』 메뉴에서 신청

○ 분할납부 보험료 자동계좌이체 안내

- 자동이체를 이미 신청한 사업장 : '15년 확정보험료 및 '16년 개산보험료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보험료는 2기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 : 개산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이 2기부터 자동이체를 적용받으려면 4월 1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금융기관 또는 우리공단 지역본부 · 지사로 자동 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유선신청 (유선신청은 사업주, 법인 대표이사 또는 법인 직원가능)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안내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신고 · 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를 가산금으로 징수
  – 가산금의 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미징수

연체금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체금 징수 (첫달은 3%, 다음달부터 1%씩 최장 7개월 동안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와 보험료 체납이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 미징수

제출 방법 안내

○ 모든 기재사항을 작성하셨으면, 보험료신고서 서식 내의 관할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방문, 팩스,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보험료는 납부서 뒷면 납부방법을 확인하여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6년 3월 26 일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 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 지사
- **팩스 접수** (팩스번호 : 30~31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 지사 안내 참조)

  ▷ 보험료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하는 사업주께서는 전자팩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0502를 포함 11자리 번호를 눌러야 정상수신 가능

  ▷ 전자팩스 수신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6. 2. 15.~3. 31. 기간 중에는 전자팩스 수신에 대한 자동회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전자팩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므로 접수 폭주 시간대인 13~17시를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팩스」 신고시스템 도입 : 별도의 팩시밀리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험료 및 보수총액 등 각종 신고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팩스로 송 ·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 total.k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 **인터넷 접수**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전자납부도 가능)

  ※ 단,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필요

- **우편 접수 :** '16. 3. 31.(목)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보험료 전자신고 방법

【 토탈서비스 보험료신고 순서도 】

토탈서비스 접속 (로그인) → 빠른서비스 – 보험료신고서 → 보수총액 입력

저장 ← 접수(인쇄) ← 납부서 발행

1. 토탈서비스 접속 ➔ 2. 빠른서비스–보험료 신고서

① **(토탈서비스 접속)** 포털사이트를 통해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를 검색하여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미가입시 회원가입)

② **(빠른서비스–보험료신고서)** 로그인 후 바로 옆에 있는 빠른서비스–보험료신고서를 클릭합니다.

③ **보험구분 체크,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보험년도 :** 2016 선택, 신고서 구분 : 확정및개산 → 조회 클릭

④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항목 입력**

⑤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입력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험요율	확정보험료	신고액	납부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포함)		2015.1.1.~2015.12.31.	0	38.84 / 1000	0	1,496,360	1,496,360
	합계		0		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5.1.1.~2015.12.31.	0	13.00 / 1000	0	500,840	500,840
	합계		0		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5.1.1.~2015.12.31.	0	2.50 /1,000	0	96,310	96,310

⑥ ‘확정보험료 산정기초자료’ 입력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업		고직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명	원
합계						
월평균						

➔ 월별인원, 월별보수총액 등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인원을 기재합니다.

➔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하도급노무비율을 사용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 현장)은 10페이지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⑦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납부구분(일시납부/분할납부)선택, 작성된 보험료신고서 내용 확인 후 ‘접수’ 클릭(접수완료)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수추정액)	요율	개산보험료	납부구분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포함)		2016.1.1.~2016.12.31.	0	38.84 / 1000	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합계		0		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6.1.1.~2016.12.31.	0	13.00 / 1000	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합계		0		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6.1.1.~2016.12.31.	0	2.50 /1,000	0	
확정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초과) 사유기재			○ 근로자감소 ○ 휴업일 ○ 기타			

⑧ 납부서 인쇄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시중은행, 농(수)협 · 회원조합 포함〕, 우체국에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신용카드 납부관련 20페이지 참조)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무료서비스』안내

공단은 전국에 2,5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용 · 산재보험 사무를 무료로 대행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가입 · 납부서비스 ➔ 보험사무 ➔ 보험사무대행기관”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 보험사무대행기관 앱 검색 ➔ 앱 설치 (웰핀)후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

○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안내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정보 안내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용인증서 사용 안내

●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란?

금융거래용 인증서의 제3자(직원 등) 이용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및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만 제한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우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 이용 가능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유관기관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 퇴직연금서비스 (pension.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건강보험EDI 서비스 (edi.nhis.or.kr) • 국민연금EDI서비스 (edi.nps.or.kr) • 고용보험 (ei.go.kr)
▷ 전용인증서 발급 문의 : 1688-2370	▷ 신청방법 :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기한 변경 안내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가능기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6. 1. 1.)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부터 1년 이내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확대 안내

● 2016년부터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건설업 · 벌목업 이외 사업(건설기계관리사업 포함) :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1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 2년 전 총공사실적 40억 원 이상 → 20억 원 이상 사업장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사업 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 지원보수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건설업 본사	건설공사 및 벌목업	건설업 본사	건설공사 및 벌목업
지원기준	근로자수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140만원 미만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벌목재적량 2,700㎥미만의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수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벌목재적량 2,700㎥미만의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지원금 지급신청방법	법정기한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 · 납부한 후 4월10~30일까지	공사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 · 납부한 후 공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까지	법정기한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 · 납부한 후 4월10~30일까지	공사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 · 납부한 후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지원율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의 각 50%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의 각 60%범위 내 (신규가입자 : 60%, 기가입자 : 40%)	

○ 건설업 등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비율 안내

구 분	2015년	2016년
건설업 본사	10/1,000	10/1,000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8/1,000	38/1,000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27%	27%
하도급 건설공사 노무비율	31%	31%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17/1,000	17/1,000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8/1,000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0.04/1,000	0.04/1,000

※ 임금채권부담금비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보험료신고서상의 산재보험료율에 합산 표시 됩니다.

복지 · 대부사업 안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융자대상** : 소속사업장 3월 이상 재직 근로자
▷ **융자종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소액생계비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금액** : 1인당 항목별 1천만원 한도(항목중복 시 최대 2천만원)
▷ **이 자 율** : 연리 2.5% (보증료 0.9~1.0% 별도)
▷ **융자상환**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대부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 **대상훈련** : 4주(28일) 이상의 직업훈련 수강자
▷ **대부금액** : 1인당 최대 1,000만원(훈련기간에 따라 월 50-100만원 분할 대부)
▷ **이 자 율** : 연리 1.0% (보증료 1.0% 별도)
▷ **대부상환** : 1~3년 거치 3~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대상**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 사업주
▷ **지급대상**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5천만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 **융자방식** :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 **이 자 율** : 신용 · 연대보증 연리 4.2%, 담보제공 연리 2.7%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근로자 휴양콘도

▷ **대 상** : 모든 근로자(평일)(단, 주말, 성수기는 239만원이하 근로자만 이용 가능)
▷ **이용가능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희망드림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를 참고하세요.

근로자 문화예술제

▷ **대 상** :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 **분 야** : 음악, 연극, 미술, 문학
▷ **세부사항** : 근로자 문화예술제 홈페이지 참고(www.workarts.co.kr)

퇴직연금사업 안내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대상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DC형)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① **믿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② **저렴합니다** : 낮은 운용관리수수료(0.1%, 자산관리수수료 별도)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③ **간편합니다** : 복잡한 서식과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④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CI)과 삼성화재(CI)에서 적립금 자산을 관리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사용자에게 좋은 점 |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의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부담금 납입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부터 폐지

▷ 퇴직일시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매분기/매반기/매년별로 나누어 적립 가능합니다.
– 비용부담이 평준화되어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

| 근로자에게 좋은 점 |

▷ 퇴직급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사업장의 도산, 파산 시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16.5% 공제)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역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지원센터 1661-0075.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을 쳐보세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 지사 안내

지사명	부서명	우편번호	소재지	전자팩스번호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1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	0502-223-3101
	가입지원2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	0502-223-3201
서울강남지사	가입지원1부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타워 10층	0502-345-3101
	가입지원2부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타워 9층	0502-345-3200
서울서초지사	가입지원1부	06720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16층	0502-217-2101
	가입지원2부	06720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16층	0502-217-1200
서울동부지사	가입지원1부	0551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4층	0502-343-3100
	가입지원2부	0551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4층	0502-343-4101
서울성동지사	가입지원부	04782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거영빌딩 4층	0502-460-2100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1부	04108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3 구프라자 12층	0502-207-3100
	가입지원2부	04108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3 구프라자 10층	0502-207-4100
서울남부지사	가입지원1부	07254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8 근로복지공단4층	0502-216-3100
	가입지원2부	07254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8 근로복지공단4층	0502-216-4100
서울북부지사	가입지원1부	02098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리베로빌딩 6층	0502-844-3100
	가입지원2부	02098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리베로빌딩 2층	0502-844-4100
서울관악지사	가입지원1부	0837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10층(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0502-210-3100
	가입지원2부	0837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10층(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0502-210-4100
의정부지사	가입지원1부	11673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5 축협빌딩 5층	0502-828-3100
	가입지원2부	11673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5 축협빌딩 3층	0502-828-4100
춘천지사	가입지원부	24415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7층	0502-301-3100
태백지사	가입지원부	26008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181 3층	0502-311-3100
강릉지사	가입지원부	25492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한국빌딩 3층, 4층	0502-330-3100
원주지사	가입지원부	26387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	0502-340-3100
영월지사	가입지원부	2623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3번길 30 KT 3층	0502-371-3100
부산지역본부	가입지원부	48731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초량동) 아모레퍼시픽빌딩 7층	0502-661-3100
부산중부지사	가입지원부	47244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부전1동 91-5) 동아빌딩 12층	0502-801-2100
부산동부지사	가입지원부	4727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길 26번(부곡동) 부산합동청사 2층	0502-550-3101
부산북부지사	가입지원부	46269	부산 북구 기찰로12 7층(덕천동,이수빌딩)	0502-318-3100
창원지사	가입지원1부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4 (신월동,국민연금공단 3층)	0502-268-3100
	가입지원2부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4 (신월동,국민연금공단 3층)	0502-268-4100
울산지사	가입지원부	44661	울산 남구 문수로 330 공작빌딩 4층	0502-218-3100
양산지사	가입지원부	50635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2층	0502-380-3100
진주지사	가입지원부	52725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888 아이비타워 7층	0502-766-3100
통영지사	가입지원부	53015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미래메디컬빌딩 6층	0502-001-3100
대구지역본부	가입지원부	41948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5 경일종합금융빌딩 8층	0502-599-3101 0502-601-1100
경산지사	가입지원부	38621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도륜빌딩 7층	0502-819-2101
대구서부지사	가입지원부	42645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두류동 495-45) 감삼빌딩 9층	0502-609-3100
대구북부지사	가입지원부	41560	대구 북구 침산로 142 화성투엠빌딩 3층	0502-607-3100
포항지사	가입지원부	37685	포항시 남구 대이로23 KT&G 3층	0502-288-3100
구미지사	가입지원부	39281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송정동)	0502-479-3101
영주지사	가입지원부	36126	경북 영주시 대학로 13 대성빌딩 10층	0502-639-3100
안동지사	가입지원부	36643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5층	0502-850-3100
경인지역본부	가입지원1부	21556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구월동 1143-4) 미추홀타워 7층	0502-077-3101
	가입지원2부	21556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구월동 1143-4) 미추홀타워 6층	0502-451-4100
인천북부지사	가입지원1부	21417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478인천노동복지합동센터4층(구산동34-4)	0502-530-3100
	가입지원2부	21417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478인천노동복지합동센터4층(구산동34-4)	0502-540-4100
수원지사	가입지원1부	1631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수원상공회의소 3층	0502-231-3100
	가입지원2부	1631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수원상공회의소 3층	0502-231-4100
부천지사	가입지원부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다성빌딩 9층	0502-649-3100
안양지사	가입지원1부	1400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안양3동, 교보빌딩 8층)	0502-463-3101
	가입지원2부	1400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안양3동, 교보빌딩 8층)	0502-463-4101
안산지사	가입지원1부	1553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본오동, 반월농협빌딩3층)	0502-481-3101
	가입지원2부	1553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본오동, 반월농협빌딩3층)	0502-481-4101
성남지사	가입지원1부	13426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대덕프라자2차 6층	0502-719-3100
	가입지원2부	13426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대덕프라자2차 6층	0502-719-4100
평택지사	가입지원1부	17774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 타워 9층	0502-669-3100
	가입지원2부	17774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 타워 8층	0502-669-4101
고양지사	가입지원1부	1041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빌딩 4층	0502-810-3100
	가입지원2부	1041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빌딩 4층	0502-810-4100
광주지역본부	가입지원부	61925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양동) kdb빌딩 10층	0502-608-3100
광산지사	가입지원부	62364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82 (우산동,광주무역회관7층)	0502-702-2100
전주지사	가입지원1부	5501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 3길 21-12(KT인후빌딩 5층)	0502-600-3105
	가입지원2부	5501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 3길 21-12(KT인후빌딩 5층)	0502-600-4100
익산지사	가입지원부	54552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어양동)	0502-839-3100
군산지사	가입지원부	54026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군산도시가스건물 2층	0502-450-3101
목포지사	가입지원부	58730	전남 목포시 영산로118(호남동129)목포KT빌딩 5층	0502-240-3100
여수지사	가입지원부	59676	전남 여수시 시청로 2	0502-680-3100
제주지사	가입지원부	632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14	0502-718-3100
대전지역본부	가입지원부	35209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둔산동929) 사학연금회관 16층	0502-870-3100
유성지사	가입지원부	34068	대전 유성구 반석로9 더존타워 8층	0502-820-2100
청주지사	가입지원부	28481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6번길21(내덕동)	0502-229-3100
충주지사	가입지원부	27384	충북 충주시 천변로 261 향군회관 1-3층	0502-860-3100
천안지사	가입지원1부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7층	0502-629-3100
	가입지원2부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7층	0502-629-4100
보령지사	가입지원부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1길 19, 2~4층 (동대동, 창산빌딩)	0502-849-3100

※ 전자팩스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0502를 포함 11자리 번호를 눌러야 정상수신 가능합니다.

전자팩스 관련 안내

전자팩스는 24시간 활용이 가능하므로 접수 폭주 시간대인 13시~17시를 가급적 피하여 전송하여 주시고, 수신여부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 수신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16. 2. 15.~3. 31. 기간 중에는 전자팩스 수신에 대한 자동회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